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97
------------	-----

2015. 12. 18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1. 제안경위

- 2015. 5. 19. 김인제 의원 발의(2015. 5. 26. 회부)

2. 제안이유

-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여”를 “이바지”로 하고 “1회에 한하여”를 “한 번만”로 하며 “잔여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하고 “2회”를 “두 차례”로 하며 “청취하다”를 “듣다”로 하고 “비치”를 “보관”으로 하며 “수탁기관”을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고 “언어야”를 “받아야”로 하며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하며 “통보하다”를 “알리다”로 함.(안 제1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기 타 :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정책적 쟁점사항은 없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약자 등 에 대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이바지하기</u> ----- -----.</p>
<p>제9조(구성)</p> <p>①~③ (생략)</p> <p>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1. <u>시의회</u> 의장이 추천하는 <u>시의원</u> 3 명</p> <p>2. (생략)</p> <p>⑤ (생략)</p>	<p>제9조(구성)</p> <p>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 -----.</p> <p>1. <u>서울특별시의회</u> ----- 서울 <u>특별시의회 의원</u> ---</p> <p>2.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제10조(임기)</p> <p>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고 <u>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 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 기의 <u>잔여기간으로</u> 한다.</p> <p>② (생략)</p>	<p>제10조(임기)</p> <p>① ----- -- <u>한 번만</u> ----- ----- ----- --- <u>남은 기간으로</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2조(회의 등)</p> <p>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 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p>	<p>제12조(회의 등)</p> <p>① ----- ----- <u>두</u> <u>차례</u>-----</p>

<p>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p> <p>1.~3. (생략)</p> <p>② (생략)</p>	<p>----- -----.</p> <p>1.~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3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u>청취하거나</u>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13조(관계부서의 협조) ----- ----- ----- ----- <u>듣거나</u> ----- -----.</p>
<p>제14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u>비치하여야</u> 한다.</p>	<p>제14조(회의록) ----- ----- <u>보관하여야</u> ----.</p>
<p>제18조(관리 및 운영)</p> <p>①~③ (생략)</p> <p>④ <u>수탁기관</u>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u>얻어야</u> 한다.</p> <p>⑤ (생략)</p> <p>⑥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u>의하여</u>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p>	<p>제18조(관리 및 운영)</p> <p>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u>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u>은 ----- ----- <u>받아야</u> ----.</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 ----- ----- <u>따라</u> ----- -----.</p>
<p>제19조(지도 감독)</p> <p>①~② (생략)</p> <p>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p>	<p>제19조(지도 감독)</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서로 수탁기관에 <u>통보하고</u>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 <u>알리고</u> ----- -----.</p>
<p>제2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u>의한다</u>.</p>	<p>제2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 ----- ----- ----- <u>따른다</u>.</p>